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체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식 명문화〉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11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12. 27.
3. 회 부 일: 2024. 12. 3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 기억된 정보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안 제106조제3항), 정보의 선별 추출, 복제 등의 경우 정보저장매체 관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통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4항).

현행	개정안
第106條(押收) ① · ② (생략)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第106條(押收)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 기억된 정보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을 통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u><신 설></u> ④ (생 략)	<u>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u> <u>④ 정보저장매체등의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선별 추출, 복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관리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를 준용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총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 그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현행법 제106조제3항, 제219조).¹⁾

- 1)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만 규정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²⁾

이에 따라 종래 ‘유체물’이 아닌 ‘전자정보’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 해석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효시적 의미를 지닌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³⁾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 자체가 압수 대상임을 전제로 선별압수 원칙 등을 실시하였음.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2)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 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2011. 7. 18. 법률 제10864호 개정 형사소송법은 현행법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별압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임.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도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바, 현행법 제106조 제3항은 전자증거 압수 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선별압수가 원칙이고, 저장매체의 ‘압수’는 예외적으로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루어짐. 현행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의 ‘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는 ‘반출’로 해석됨.⁵⁾

즉, 전자정보는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①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복제하고, ② 이러한 것도 불가능한 경우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게 됨.⁶⁾

4) 사법정책연구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2021. 5., p.223.

5) 사법정책연구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2021. 5., p.229.

6) 여기서 ①의 경우란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된

나. 개정안의 취지 및 추가적 고려사항

개정안은 기존 조항에서 단순히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라고만 규정했던 것을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정보 선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정보저장매체 관리자에게 선별 추출, 복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및 압수수색의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는 전자정보의 압수방식을 규정하나 실제 압수·수색 시 오탈자나 은어 사용 등의 사유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압수 사건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검색어나 대상기간이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질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후 변경된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3.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고,

②의 경우란 “1. 집행현장에서의 복제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김휘옥·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p.565.~566.)

검색어로 재차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현재에도 복잡한 사건의 경우, 정보저장매체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바,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경우 기술, 예산, 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둘째, 정보매체 압수 방법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음.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바, 어느 범위의 방법까지 허용되는지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법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만약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는 경우 예외조항인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이 원칙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훼손하여 증거인멸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정보저장매체 관리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참여권 보장은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정보저장매체가 관련된 대규모 사건의 경우, 모든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인력과

업무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